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98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문진석·김교흥·이건태

윤종군 • 박정현 • 김기표

강준현 · 손명수 · 한정애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 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었으나 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① 사업주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을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
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
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7조의2(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①
	사업주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
	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
	<u>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u>
	자"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
	른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u>한다.</u>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	4
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	<u>사용검사권자</u>

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 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 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 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